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2. 2025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의안	25-48
번호	25-49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나. 제 출 일 : 2025. 5. 23.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보건소 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3억 3,594만 2,000원, 징수결정액 195억 6,123만 9,53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5억 2,426만 4,030원이고, 3,697만 5,500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97%, 징수결정액 대비 99.81%를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19,335,942,000	19,561,239,530	19,524,264,030	36,975,500	100.97%	99.81%
일반회계	19,335,942,000	19,561,239,530	19,524,264,030	36,975,500	100.97%	99.81%

※특별회계: 없음

나. 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37억 2,208만 2,000원으로 이 중 315억 8,501만 5,785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음. 예산현액

대비 2.53%에 해당하는 12억 8,162만 4,63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33,722,082,000	31,585,015,785	-	1,304,886,700	1,281,624,635	2.53%
일반회계	33,722,082,000	31,585,015,785	-	1,304,886,700	1,281,624,635	2.53%

※특별회계: 없음

다. 기금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금종류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식품진흥기금	2,715	△59	185	244	2,656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93억 3,594만 2,000원, 징수결정액 195억 6,123만 9,530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5억 2,426만 4,030원이고, 3,697만 5,500원이 미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100.97%, 징수결정액 대비 99.81%를 수납하였음.
- 수납액 중 ‘보조금’ 181억 2,922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8억 3,405만 3,670원, ‘세외수입’이 3억 2,724만 3,360원, ‘조정교부금’ 2억 3,374만원 순임.
- 부서별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3,697만 5,500원 중 위생과에서 3,160만 5,300원(85.48%)으로 가장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19,335,942,000	19,561,239,530	19,524,264,030	36,975,500	100.97%	99.81%
세외수입	260,997,000	364,218,860	327,243,360	36,975,500	125.38%	89.85%
조정교부금	233,740,000	233,740,000	233,740,000	-	100%	100%
보조금	18,320,861,000	18,129,227,000	18,129,227,000	-	98.95%	1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520,344,000	834,053,670	834,053,670	-	160.29%	100%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세입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19,335,942,000	19,561,239,530	19,524,264,030	36,975,500	100.97%	99.81%
보건행정과	3,483,266,000	3,221,428,250	3,221,428,250	-	92.48%	100%
위생과	498,350,000	519,685,780	488,080,480	31,605,300	97.94%	93.92%
건강동행과	14,429,832,000	14,918,227,960	14,913,995,760	4,232,200	103.36%	99.97%
의약과	924,494,000	901,897,540	900,759,540	1,138,000	97.43%	99.87%

나. 일반회계 세출 결산

-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37억 2,208만 2,000원이며, 315억 8,501만 5,785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8억 3,217만 9,515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53%임.
- 부서별 불용률 보면 의약과가 전체 집행잔액 8억 3,217만 9,515원 중 1억 9,300만 4,222원(7.89%)으로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임.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 원)

부 서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합 계	33,722,082,000	31,585,015,785	-	1,304,886,700	832,179,515	2.53%
보건행정과	6,523,542,000	5,677,887,000	-	647,550,060	198,104,940	3.04%
위생과	868,170,000	818,371,800	-	3,532,170	46,266,030	5.33%
건강동행과	23,884,219,000	22,863,074,867	-	626,339,810	394,804,323	1.65%
의약과	2,446,151,000	2,225,682,118	-	27,464,660	193,004,222	7.89%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 현황은 ‘지출잔액’ 5억 3,355만 3,466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641만 4,049원, ‘예산절감액’ 2,607만 7,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613만 5,000원임.
- 보건소 집행잔액 총 8억 3,217만 9,515원 중 건강동행과의 집행잔액이 3억 9,480만 4,323원으로 47.44%를 차지하며 건강동행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불용율(집행잔액)이 높게 발생함.

[부서별 집행잔액(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원)

부 서	집행잔액	원인별 잔액 현황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 생	낙찰차액	지출 잔액
합 계	832,179,515	266,414,049	26,077,000	6,135,000	-	533,553,466
보건행정과	198,104,940	66,858,610	10,089,000	-	-	121,157,330
위생과	46,266,030	3,531,370	1,589,000	-	-	41,145,660
건강동행과	394,804,323	189,921,877	8,604,000	2,300,000	-	193,978,446
의약과	193,004,222	6,102,192	5,795,000	3,835,000	-	177,272,030

라. 과다불용액 발생 사업

- 일반회계 세출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총 2건으로 건강동행과의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36.64%)’과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30.8%)’이 있음.
- 건강동행과의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의 57.21%에 해당하는 192만 9,21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함.

[불용률 30%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건강동행과 (2건)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3,372,000	404,280	-	1,929,210	1,038,510	30.8%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100,000	193,900	-	503,050	403,050	36.64%

- 집행잔액(불용액) 3천만원 이상 사업은 7건임. 이 중 부서별 불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보건행정과의 ‘통합민원서비스(26.35%)’ 4,440만 3,670원, 건강동행과의 ‘자체예방 접종사업(19.79%)’ 8,486만 3,160원, 의약과의 ‘검사 및 검진사업(12.54%)’ 3,889만 2,650원임.

[불용액 3천만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보건행정과 (3건)	통합민원서비스	168,541,000	124,137,330	-	-	44,403,670	26.35%
	정신보건사업	875,985,000	772,762,220	-	55,680,790	47,541,990	5.43%
	방역소독	337,725,000	299,808,550	-	350,030	37,566,420	11.12%
건강동행과 (3건)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2,122,455,000	1,856,312,330	-	231,492,990	34,649,680	1.63%
	자체예방접종사업	428,779,000	343,915,840	-	-	84,863,160	19.7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848,080,000	602,987,110	-	159,304,400	85,788,490	10.12%
의약과(1건)	검사 및 검진사업	310,170,000	271,277,350	-	-	38,892,650	12.54%

4. 특별회계 결산

- 특별회계 : 없음

5.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건, 1,699만 2,000원을 전용하였음.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2건				72,798,000	16,992,000	16,992,000	
보건 행정 과	1	감염병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23,220,000	6,797,000	-	보건소 진료 업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통합민원 서비스	기 간 제 근 로 자 등보수	10,195,000	-	6,797,000	
	2	통합민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39,383,000	10,195,000	-	보건소 진료의사 결원 및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 긴급 채용
		통합민원 서비스	기 간 제 근 로 자 등보수	-	-	10,195,000	

다.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른 업무 이관 사유로, 보건소에서는 ‘아현문화 건강센터 시설관리’ 사업이 의약과(송신)과 어르신동행과(수신)으로 예산이체 1건이 있음.

라. 예산 변경

-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1억 2,535만 9,000원을 변경하였음.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원)

부서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8건			3,990,679,000	125,359,000	125,359,000	
보건 행정 과	1	건강도시 조성 사무관리비	4,535,000	740,000		건강도시 마포 특강 운영을 위한 강사료 지급예산 확보
		건강도시 조성 행사운영비			740,000	
	2	서울형 입원 생활 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90,000,000	13,294,000		통계목 착오 간주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변경
		서울형 입원 생활 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000,000		13,294,000	
건강 동행 과	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의료및회복비	7,715,000	4,343,00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의료및회복비 환아관리	34,656,000		4,343,000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료및회복비	60,318,000	10,060,00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의료및회복비 환아관리	24,596,000		10,060,000	
	5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의료및회복비	2,212,455,000	90,000,000		2024년 사후조리경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부족분 예산확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382,000,000		90,000,000	
	6	햇빛센터운영및 예산부 행 사실비 지원	10,810,000	1,800,000		2024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검진기관 의료비 지급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영유아관리)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의료및회복비	41,622,000		1,800,000	예산 부족분 확보
	햇빛센터 운영(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의료및회복비	20,500,000	1,122,000		2024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검진기관 의료비 지급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의료및회복비	40,500,000		1,122,000	예산 부족분 확보
의약과	아현보건지소 운영	공공운영비	36,872,000	4,000,000		아현보건지소 관리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변경
	아현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14,100,000		4,000,000	

6.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 : 없음

7.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

-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1,529만 6,983 원이고, 당해연도에 5,920만 5,881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6억 5,609만 1,102원임.

[조성 총괄]

(단위 : 원)

구분 부서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중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위생과	2,715,296,983	△59,205,881	184,649,249	243,855,130	2,656,091,102

※당해연도 기금사용 사유 : 주민 건강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모범음식점 지원 등

- 식품진흥기금 운용액은 수입액 28억 9,994만 6,232원으로 약 26억원 규모의 예치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업비는 2억 4,269만 4,940원(비용자성 1억3,869만 4,940원, 용자성 1억400만원)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입				지출				다 음 연 도 이월액 (사고 등)
	용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비용자 성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	2,899,946,232				2,899,946,232				-
	19,745,447	2,715,296,983	102,891,802	62,012,000	138,694,940	104,000,000	2,656,091,102	1,160,190	

8. 예비비 지출

-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 5,490만원으로, 모두 2024년 추석연휴 근무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함.

[예비비 사용 현황]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사유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총 2건				54,900,000	54,900,000	-	-	
의약과	1	의료기관 관리	의료 및 회복비	14,750,000	14,750,000	-	-	2024년 추석연휴 근무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예비비 사용
	2	의약품 조제·투약	의료 및 회복비	40,150,000	40,150,000	-	-	2024년 추석연휴 근무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예비비 사용

9.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2024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81%로 전년도(99.8%)와 차이가 없음. 세입의 대부분은 각 부서의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195억 2,426만 4,030원으로 전년도(217억 9,487만 5,950원) 대비 약 23억원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 결과, 보건소 총 미수납액은 3,697만 5,500원으로 징수결정액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비 0.18% 수준임. 이 중 위생과 소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태료 3,160만 5,300원이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해당 과태료는 주로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에 따른 식품위생법 및 공중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부과된 것으로 부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임을 감안할 때,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납부 이행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징수율 확보 노력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 체계 개선과 과태료 부과 원인 자체를 해소할 사전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겠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평균 불용률은 2.53%으로 전년도(5.9%)보다 다소 줄어듦. 그러나 건강동행과의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36.64%)’와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30.8%)’ 사업에서 30% 이상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이 두 사업 모두 예산현액 337만 2,000원, 110만원 대비 높은 비중으로 192만 9,210원과 50만 3,050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함. 특히,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434만 3,000원을 예산 변경하여 감액한 바 있음에도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반납했으므로 사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불용률 증가는 단순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과 집행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전 기획, 일정, 절차 관리의 미흡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집행잔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집행 노력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불용액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며, 개별사업의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요망됨.

2)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 예산 전용은 총 2건, 1,699만 2,000원으로, 전년도(총 2건, 5,500만원) 대비 전용 건수는 동일하나 전용 금액은 감소함.
- 전용 모든 건은 보건소 소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 확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임.
- 이는 감염병 대응 관련 사무가 상시적·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요에 대해 사전에 적절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복적인 예산 전용은 곧 인력 수급계획의 부정확성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정례화된 사무에 대한 인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에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되겠음.
- 예산 변경은 총 8건, 변경금액은 1억 2,535만 9,000원임. 사업내역으로는 건강동행과에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건을 각각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동 예산 의료 및 회복비로 각각 434만 3,000원과 1,006만원 변경함.
- 사후조리경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 부족분 예산 확보를 위해

‘난임부부지원(전환사업)’ 의료 및 회복비 9,000만원을 ‘산후조리 경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으로 변경함.

-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검진기관 의료비 지급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2건을 ‘햇빛센터운영(임산부 영유아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80만원과 동 사업 의료 및 회복비 112만 2,000원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변경함.
- 예산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 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전용과 변경은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은 없음.

5)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1년에 설치되었으며, 26억 5,609만 1,102원을 조성함. 주민 건강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식품위생감시원 운용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에 사용됨.
-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신축적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금 사업이 여러 개인 관계로 정치적 우선순위에 의한 기금 사용이 결정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 가능한 사업들의 평가로 재정융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것임.

6) 예비비 지출

- 2024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은 총 2건, 5,49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약과에서 추석 연휴 기간 비상근무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을 목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것임. 이는 서울시 매칭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측면에서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은 인정됨.
- 다만, 해당 사업은 2025년도에도 유사한 사유로 예비비가 반복적으로 지출된 바 있어, 명절 연휴 기간의 비상진료 체계 운영이 사실상 지속적인 연례사업임을 시사하고 있음. 예비비는 본래 예측이 곤란한 예외적 지출에 대비한 긴급재원인 점을 감안할 때, 반복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계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동 사업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부서는 사전 기획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겠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2025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60
----------	-------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나. 제 출 일 : 2025. 5. 23.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18,954,069	18,562,050	392,019	2.11%
일반회계	18,954,069	18,562,050	392,019	2.11%

※특별회계: 없음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31,138,673	29,443,482	1,695,191	5.76%
일반회계	31,138,673	29,443,482	1,695,191	5.76%
인건비	4,304,788	4,291,432	13,356	0.31%
물건비	1,518,395	1,512,701	5,694	0.38%
경상이전	23,328,990	23,505,947	△176,957	△0.75%
자본지출	133,402	133,402	0	0.00%
예비비및기타	1,853,098	0	1,853,098	순증

※특별회계: 없음

3.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1,138,673	29,443,482	1,695,191	5.76%
보건행정과	5,430,056	4,665,532	764,524	16.39%
위생과	972,330	963,706	8,624	0.89%
건강동행과	23,100,158	22,205,171	894,987	4.03%
의약과	1,636,129	1,609,073	27,056	1.68%

4.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일반회계(증·감액 및 신규사업)

(단위:천원)

부서·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건 행정 과	1)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예탁금	140,000	150,000	△10,000
	1)암환자의료비 지원	190,000	250,000	△60,000
	1)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270,000	250,000	20,000
	1)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20,560	22,000	△1,440
	1)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	678,400	795,000	△116,600
	1)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49,218	0	49,218
	1)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 관리	32,310	30,710	1,600
건강 동행 과	1)모자보건사업 인력	26,534	27,400	△866
	2)기본급	23,754	24,620	△866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00	1,200	△600
	1)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321,000	329,000	△8,000
	1)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1,666	49,666	△8,000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715,944	1,542,612	173,332
	1)사업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1,000	2,000	△1,000
	1)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233,000	1,292,000	△59,000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966	0	10,966
	1)발달정밀검사비 지원	2,800	3,200	△400
	1)어린이 예방접종	2,237,211	2,291,041	△53,830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 동행 과	1)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53,820	359,285	△5,465
	1)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9,119	39,956	△837
	1)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0,752	21,715	△963
	1)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4,209	4,298	△89
	1)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78,259	73,346	4,913
	1)성인 예방접종	1,633,266	1,674,472	△41,206
	1)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7,440	7,719	△279
	1)센터운영 소모품	3,089	300	2,789
	1)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과정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1,884	1,910	△26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48	0	16,448
	1)사업 안내문 및 홍보물 등 운영물품 구매비	3,931	0	3,931
	1)농식품 바우처 지원	148,200	0	148,200
	1)치매안심센터 운영	1,322,532	1,496,400	△173,868
	1)치매안심센터 운영	30,000	0	30,000
	1)첫만남이용권 지급	3,617,000	3,624,000	△7,000
	1)서울시동행센터(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78,350	904,704	△26,354
	2)기본급	615,166	643,320	△28,154
	2)동근무수당	14,400	12,600	1,800
	1)보험료부담금	179,848	218,011	△38,163
	2)퇴직금충당금	80,307	118,470	△38,163
	1)통합방문(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2,685	719,523	13,162
	2)기본급	520,066	508,344	11,722
	2)동근무수당	11,520	10,080	1,440
	1)보험료부담금	171,541	171,541	0
	2)퇴직금충당금	47,760	68,840	△21,080
	2)퇴직금충당금	21,080	0	21,080
의약 과	1)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11,040	11,520	△480
	1)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검진(일반+생애) 위탁	38,000	56,000	△18,000

나.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 (일반회계)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건 행정 과	국고보조금반환금	425,495	0	425,495
	1)202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진행잔액 및 이자	4,737	0	4,737
	1)2024년 에이즈예방관리사업 진행잔액	32,157	0	32,157
	1)2024년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9	0	99
	1)2024년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170	0	170
	1)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42,030	0	142,030
	1)2024년 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07	0	307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이자	25	0	25
	1)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자	909	0	909
	1)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이자	94	0	94
	1)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900	0	1,900
	1)2024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자	1,137	0	1,137
	1)2024년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자	148	0	148
	1)2024년 자살유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883	0	5,883
	1)2024년 말라리아 퇴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6	0	96
	1)2020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발생 이자	194	0	194
	1)2022년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824	0	234,824
	1)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277	0	277
	1)2024년 급성 감염병 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및 이자	494	0	494
	1)2024년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이자	14	0	14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56,251	0	456,251
	1)202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138	0	3,138
	1)2024년 서울시결핵관리사업 이자	56	0	56
	1)2024년 에이즈예방관리사업 진행잔액	32,157	0	32,157
	1)2024년 HIV신속검사사업 집행잔액	768	0	768
	1)2024년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9	0	99
	1)2024년 정신보건사업(디지털 정신건강 검진기기 구매) 집행잔액	8,935	0	8,935
	1)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1,015	0	71,015
	1)2024년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집행잔액	85	0	85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건 행정 과	1)2024년 정신보건사업(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46,852	0	46,852
	1)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080	0	9,080
	1)2024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이자	71	0	71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이자	17	0	17
	1)202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296	0	28,296
	1)2024년 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58	0	358
	1)2020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이자	20	0	20
	1)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자	455	0	455
	1)2024년 지역정신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787	0	8,787
	1)2024년 자살예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441	0	5,441
	1)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이자	47	0	47
	1)2024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이자	569	0	569
	1)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인력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50	0	950
	1)2024년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자	74	0	74
	1)2024년 자살유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942	0	2,942
	1)2024년 빈대 등 돌발해충 예방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0	0	170
	1)2023년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비 집행잔액 및 이자	412	0	412
	1)2022년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824	0	234,824
	1)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139	0	139
	1)2024년 급성 감염병 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및 이자	494	0	494
위생 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232	0	2,232
	1)2024년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집행잔액 및 이자	29	0	29
	1)2024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자	53	0	53
	1)2024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2,150	0	2,150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92	0	6,392
	1)2024년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집행잔액 및 이자	29	0	29
	1)2024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자	53	0	53
	1)2024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자	2,508	0	2,508
	1)2024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3,802	0	3,802
건강 동행 과	국고보조금반환금	290,473	0	290,473
	1)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831	0	9,831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 동행 과	1)2024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이자	15	0	15
	1)2024년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18	0	918
	1)2024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3,969	0	93,969
	1)20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412	0	2,412
	1)2024년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98	0	998
	1)2024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5,042	0	5,042
	1)2023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예탁금)	3,359	0	3,359
	1)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예탁금)	25	0	25
	1)2024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75,837	0	75,837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2,088	0	2,088
	1)2024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5,523	0	5,523
	1)2024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15	0	715
	1)2024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6,498	0	16,498
	1)2024년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42	0	5,342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988	0	6,988
	1)2024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53	0	953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 이자	3	0	3
	1)2024년 출산장려지원사업(첫만남) 이자	14,587	0	14,587
	1)2024년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5,079	0	5,079
	1)2024년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집행잔액 및 이자	11,248	0	11,248
	1)20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24,318	0	24,318
	1)2024년 치매공공후견 지원 이자	55	0	55
	1)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4	0	14
	1)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499	0	499
	1)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4,127	0	4,127
	1)2024년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	0	30
	시 · 도비보조금반환금	626,719	0	626,719
	1)202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449	0	11,449
	1)2024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이자	18	0	18
	1)2024년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71	0	1,071
	1)2024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9,630	0	109,630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 동행 과	1)202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전환사업) 이자	3,568	0	3,568
	1)2024년 서울형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16	0	516
	1)2024년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이자	2,435	0	2,435
	1)2024년 서울맘찾아가는행복수유지원사업 이자	61	0	61
	1)2024년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172	0	1,172
	1)2024년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50	0	1,150
	1)2024년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17	0	817
	1)2024년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445	0	5,445
	1)2024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5,879	0	5,879
	1)2023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3,919	0	3,919
	1)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환수금	31	0	31
	1)2024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88,497	0	88,497
	1)2024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1,657	0	1,657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1,463	0	1,463
	1)2024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58	0	358
	1)2024년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4,970	0	234,970
	1)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566	0	2,566
	1)2024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9,226	0	19,226
	1)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53	0	1,053
	1)2024년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실천 배움터 집행잔액 및 이자	72	0	72
	1)2024년 냉동난자 사용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342	0	5,342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집행잔액 및 이자	3,494	0	3,494
	1)2024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477	0	477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비이자	2	0	2
	1)2024년 35세 이상 임신부의료비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37,930	0	37,930
	1)2024년 출산장려지원사업 이자	13	0	13
	1)2024년 출산장려지원사업(첫만남) 이자	8,914	0	8,914
	1)2024년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718	0	3,718
	1)2024년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1,523	0	1,523
	1)2024년 인력운영비(서울시 방문간호사) 집행잔액 및 이자	36,302	0	36,302
	1)2024년 인력운영비(통합방문간호사) 집행잔액 및 이자	15,821	0	15,821
	1)20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12,159	0	12,159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 동행 과	1)2024년 치매공공후견 지원 이자	28	0	28
	1)2024년 치매예방 스마트케어 프로그램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202	0	202
	1)2024년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지원 이자	3	0	3
	1)2024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667	0	667
	1)2024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30	0	1,730
	1)2024년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이자	34	0	34
	1)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집행잔액 및 이자	1,238	0	1,238
	1)2024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이자	64	0	64
	1)2024년 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35	0	35
의약 과	국고보조금반환금	11,964	0	11,964
	1)2024년 재활보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15	0	415
	1)2024년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집행잔액	1,693	0	1,693
	1)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606	0	606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279	0	279
	1)2024년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이자	16	0	16
	1)2024년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148	0	148
	1)2024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이자	245	0	245
	1)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이자	159	0	159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집행잔액	8,403	0	8,403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3,572	0	33,572
	1)2024년 어르신건강동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979	0	979
	1)2024년 아현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이자	371	0	371
	1)2024년 서강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660	0	1,660
	1)2024년 취약계층 건강보조관리사업 이자	263	0	263
	1)2024년 재활보건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4	0	124
	1)2024년 인력운영비(어르신건강동행사업) 집행잔액	3,493	0	3,493
	1)2024년 인력운영비(지역사회중심재활) 집행잔액	509	0	509
	1)2024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364	0	364
	1)2024년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 이자	16	0	16
	1)2024년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64	0	64

(단위:천원)

부서·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의약과	1)2024년 인력운영비(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15,834	0	15,834
	1)2024년 소아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이자	245	0	245
	1)2024년 건강증진사업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196	0	196
	1)2024년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97	0	597
	1)2024년 서울시약자동행공모사업(함께하는 구강건강동행관리)집행잔액 및 이자	1,545	0	1,545
	1)2024년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집행잔액 및 이자	2,265	0	2,265
	1)2024년 중독치료동행의원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664	0	664
	1)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 이자	80	0	80
	1)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집행잔액	4,202	0	4,202
	1)2024년 추석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 사업 이자	101	0	101

5.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189억 5,4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185억 6,205만원)보다 3억 9,201만 9,000원(2.11%) 증액되었음.
-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311억 3,8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294억 4,348만 2,000원)보다 16억 9,519만 1,000원(5.76%) 증액되었음.

나.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6억 6,553만 2,000원에 7억 6,452만 4,000원 증액된 54억 3,005만 6,000천원으로 약 16.39% 증가함.
- 증액편성내역은
 -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으로 2,000만원
 -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으로 4,921만 8,000원

-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및 잠복 결핵 관리’ 로 160만원.
- 감액편성내역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예탁금’ 으로 1,000만원
 - ‘암환자의료비 지원’ 으로 6,000만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운영’ 으로 144만원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탁금’ 으로 1억 1,660만원.
- 각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2,549만 5,000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5,625만 1,000원을 편성함.
- 위생과는 기정액 9억 6,370만 6,000원에 862만 4,000원 증액된 9억 7,233만원으로 약 0.89% 증가함.
 - 각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23만 2,000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39만 2,000원을 편성함.
- 건강동행과는 기정액 222억 517만 1,000원에 8억 9,498만 7,000원 증액된 231억 15만 8,000원으로 약 4.03% 증가함.
- 증액편성내역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으로 1억 7,333만 2,000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로 1,096만 6,000원
 -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으로 491만 3,000원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센터운영 소모품’ 으로 278만 9,000원
 - ‘농식품 바우처 사업’ 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로 1,644만

8,000원, ‘사업 안내문 및 홍보물 등 운영물품 구매비’로 393만 1,000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1억 4,820만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3,000만원(월 500만원씩 6개월)
- ‘서울시동행센터(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동근무수당’으로 180만원
- ‘통합방문간호사(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기본급’으로 1,172만 2,000원, ‘동근무수당’으로 144만원
- ‘통합방문간호사 공무원직(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충당금’으로 2,108만원(398만원씩 12명).

- 감액편성내역은

-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기본급’으로 86만 6,000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
- ‘35세 이상 임신부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원
-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중 ‘사업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으로 5,900만원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40만원
- ‘예방접종사업’ 중 ‘어린이 예방접종’으로 5,383만원,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546만 5,000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83만 7,000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96만 3,000원,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으로 8만 9,000원, ‘성인 예방접종’으로 4,120만

6,00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으로 27만 9,000원

-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과정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로 2만 6,000원
- ‘치매안심센터 운영’ 으로 1억 7,386만 8,000원
- 출산장려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700만원
- ‘서울시동행센터(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기본급’ 으로 2,815만 4,000원
- ‘서울시 방문간호사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충당금’ 으로 3,816만 3,000원
- ‘통합방문간호사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충당금’ 으로 2,108만원(175만 6,660원씩 12명).
-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와 환수금(예탁금)으로
 -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9,047만 3,000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억 2,671만 9,000원 편성함.
- 의약과는 기정액 16억 907만 3,000원에 2,705만 6,000원 증액된 16억 3,612만 9,000원으로 약 1.68% 증가함.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으로 48만원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일반+생애) 위탁’ 으로 1,800만원을 감액편성함.
- 기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 국고보조금반환금 1,196만 4,000원,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357만 2,000원 편성함.

6.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정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 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시비 보조금 분담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가. 세입예산

-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9억 5,4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201만 9,000원(2.11%) 증가하였음.
- 세입예산안 증·감액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증액분 9,122만 9,000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건강동행과 ‘2024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사업’, 의약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사업에 따른 것임.
 - 기타 보조금 1억 7,235만 5,000원 감액분은 국가 및 서울시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보건수입등 내부거래 증액분 4억 7,314만 5,000원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등 사용잔액으로 인한 반환금임.

<표 1.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장 · 관 · 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8,954,069	18,562,050	392,019	2.11%
세외수입	269,608	178,379	91,229	51.14%
경상적세외수입	91,947	91,947	0	0.00%
임시적세외수입	91,229	0	91,229	순증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86,432	86,432	0	0.00%
조정교부금등	18,578	18,578	0	0.00%
보조금	18,192,738	18,365,093	△172,355	△0.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3,145	0	473,145	순증

나. 세출예산

-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대부분은 2024년 국 ·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편성과 국 · 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에 의한 사업비 조정 및 지원사업 활성화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인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과 ‘농식품 바우처 사업’ 으로 증액 편성함.
- 보건행정과의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 · 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의 24시간 정신응급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비율(국비50%, 구비50%)에 따라 응급공공병상 마련을 위해 운영비 4,9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함.
- 이는 현행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에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관내 공공정신병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구 단위에서 병상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와 시비 매칭 구조로 운영비를 편성하

였으나, 국가보조금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구비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의 공익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확보 및 재정상의 위험 요소에 대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동행과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차원의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 식품정책과 확정내시에 따라 매칭비율(국비30%, 시비35%, 구비35%)로 편성되는 것임.
- 지원금액은 1인 월 4만원, 4인 월 10만원, 7인 이상 월 14만 5,0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차등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소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임.
- 세부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4만 8,000원, ‘사업 안내문 및 홍보물 등 운영물품 구매비’ 393만 1,000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1억 4,820만원임.
- 상기 사업은 시범적·선도적 성격의 사업으로 시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향후 재정 추계 이행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농식품 바우처 지급이 수요자의 식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편성된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 보건행정과는 2021. 6. 30. 이후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지원 중단에 따라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내시액의 변경으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함.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액을 반영해 예탁금 1억 1,660

만원 감액 편성함.

- 건강동행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 서울시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는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함.
- 위 사업들의 감액 편성된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매칭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매칭사업들의 내시액이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추경 사유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김 자 영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